의안번호	2200578
의 뢰 인	김성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F098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5년 6,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5조 5,275억원(연평균 5,5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 제2호) [1]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5,268	−5,427	−5,590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−5,758	−5,931	−6,109	−6,292	−55,275	−5,528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제1항 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– (개정안) 2034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 제1항 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4년 말)을 감안 시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
○ 2025~2034년 시설투자에 대한 세수효과는 법인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2026~2035년 발생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 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–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만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○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❑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❑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
○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기획재정부, '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', 2023. 12.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○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'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'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
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
- (기본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~13%p 우대
- (추가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%p 우대

[표 2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❑ (공제실적) 2023년 잠정실적 기준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,500억원 수준

○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수준

[표 3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
○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
※ 2025년 이후는 2024년과 동일한 투자 증감률을 적용

[표 4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…	2033	2034	2035
중소기업	8	9	10	…	15	16	17
중견기업	10	10	11	…	14	15	16
대기업	7,086	7,299	7,518	…	9,246	9,524	9,809
계	7,105	7,318	7,538	…	9,275	9,554	9,842

자료: 한국산업은행,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15, 중견 15, 중소 25
-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3, 중견 6, 중소 12

[표 5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: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…	2033	2034	2035
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기준(A)	1,513	1,558	…	1,862	1,918	1,976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기준(B)	7,538	7,765	…	9,275	9,554	9,842
차이(B-A)	6,026	6,207	…	7,413	7,636	7,8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5년 6,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5조 5,275억원(연평균 5,5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10년간 총 6조 9,094억원 감소하나, 농어촌특별세 과세(1조 3,819억원)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−5조 5,275억원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 제2호)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5,268	−5,427	−5,590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−5,758	−5,931	−6,109	−6,292	−55,275	−5,528

주: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